

제 호

평가대행자 등록증

기관(업체)명칭

대표자 성명

소재지

(전화번호:)

기타
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교통투자평가협회장 직인

